

서울특별시의회
제326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9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올해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‘24.1.)

으로 시장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

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

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

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처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

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를

보다 강화하고자, 타 지자체 및 기관 등과의

협력체계 조항을 마련하여, 다양한 주체별 협력에 기반한

시책 마련의 근거를 구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이에 안 제15조의 경우,
미세먼지 등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고자,
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조항을
신설하였습니다.

□ 그 외 안 제4조의 경우,
문맥상 자구 수정이 필요한 바,
기존 시행계획 수립 ' 및' 변경에서
시행계획을 수립'하거나' 변경으로
일부 수정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